

『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영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,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수입금 마련 지출 조항 삭제(안 제13조)
 -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수입금 마련 지출 조항 삭제
- 위원회 구성 비율 정비(안 제22조)
 -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직 위원 구성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관련법의 개정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수입금 마련 지출조항을 삭제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맞추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